

서울고등법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5나2062577 파면처분무효확인 등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배재흠

2. 이상훈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손난주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학교법인 고운학원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 17(와우리, 수원대학교)

대표자 이사장 최서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영훈, 이승철, 정용재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4가합67532 판결

변 론 종 결 2016. 4. 15.

주 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배재흠에게 255,664,000원 및 그중

가) 99,704,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1.부터 2015. 10.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 135,96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13.부터 2016. 5.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다)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1.부터 2016. 5.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2) 원고 이상훈에게 197,842,500원 및 그중

가) 95,613,375원에 대하여는 2014. 11. 21.부터, 2,2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부터, 각 2015. 10.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 80,029,125원에 대하여는 2016. 4. 13.부터 2016. 5.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다)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1.부터 2016. 5.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 나. 피고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원고 배재흠은 2016. 2. 29.까지, 원고 이상훈은 2015. 8. 31.까지 각 재직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 다.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는,
- 가. 원고 배재흠에게 265,664,000원 및 그중 129,704,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1.부터 2015. 10.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머지 135,96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 나. 원고 이상훈에게 207,842,500원 및 그중 125,613,375원에 대하여는 2014. 11. 21.부터, 2,2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부터, 각 2015. 10.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머지 80,029,125원에 대하여는 2016. 4.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 각 지급하라.
2. 피고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공단'이라 한다)에¹⁾ 원고 배재흠은

2016. 2. 29.까지, 원고 이상훈은 2015. 8. 31.까지 각 재직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원고들은 당심에서 각 파면처분 무효확인청구를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재직통지청구로, 복직시까지의 월급 청구를 정년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로 각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5. 10.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1. 라. 3)항 맨 끝에(23쪽 7째줄)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인정 근거]란에 '갑 제76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고들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통지할 것을 구하고 있는데, 이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오기(誤記)로 보이므로 선해하기로 한다.

『대법원은 2015. 11. 24. 피고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였다(2015마1187호).』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각 파면처분은 절차적 또는 실체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차 파면처분일인 2014. 1. 9.부터 각 원고들이 정년에 도달한 날까지의(원고 배재흠 2016. 2. 29., 원고 이상훈 2015. 8. 31.)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각 파면처분은 오로지 원고들을 학교로부터 축출하고자 하는 의도 하에 자행된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사학연금공단에 원고들이 이 사건 1차 파면처분으로 2014. 1. 9. 퇴직하였다는 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각 파면처분은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정년에 도달함으로써 비로소 퇴직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소송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신분변동신고를 거부하고 있다. 피고는 사학연금공단에 원고 배재흠은 2016. 2. 29.까지, 원고 이상훈은 2015. 8. 31.까지 각 재직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각 파면처분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3의 나.항부터²⁾ 3의 마.항까지의³⁾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나. 1차 파면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관하여

3) 마. 각 파면처분의 실체적 하자 중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 제1심판결 27쪽 11째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심에서 이사회 의결이 징계의결 요구 전에 있었는지 여부가 징계절차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은 아니므로, 이 사건의 경우 사후적으로 실시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앞서 본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의 규정 내용과 체계,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징계의결이 이미 이루어진 이후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도 된다고 해석할 경우, 독립기관인 교원징계위원회가 이미 내린 징계의결의 효력이 이사회 의결 여하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가 되므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66조와 정면으로 충돌할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 임명의 적정성과 신분 보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의 운영에 있어 역할과 입장을 달리하는 두 기관인 학교의 장과 이사회가 교원의 임면에 동시에 관여하도록 정한 사립학교법의 규정 취지도 몰각될 우려가 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40쪽 맨 끝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심에서 이인수 총장이 받고 있는 일부 혐의에 대하여 점사의 불기소처분이 추가로 내려진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이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의 입장에서 대상 의혹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사후적으로 의혹 중 일부가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마.항 다음에(47쪽 5째줄)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바. 소결론

원고 배재흠에 대한 이 사건 1차 파면처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또 원고들에 대한 각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원고들에 대한 각 파면처분은 모두 무효이다.』

4.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1) 미지급 임금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파면처분이 모두 무효인 이상,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각 원고들의 정년까지(원고 배재흠 2016. 2. 29., 원고 이상훈 2015. 8. 31.) 유효한 근로관계가 존속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1차 파면처분 당시 원고 배재흠의 월 평균 급여액은 9,064,000원, 원고 이상훈의 월 평균 급여액이 8,892,125원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4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배재흠에게 1차 파면처분일인 2014. 1. 9.경부터 정년인 2016. 2. 29.까지 26개월의 임금 235,664,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 이상훈에게 2014. 1. 9.부터 정년인 2015. 8. 31.까지 20개월의 임금 177,842,500원과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자료

가) 관련 법리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파면 또는 해임한 경우나, 그 징계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사립학교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파면이나 해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그러한 징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등 참조).

나)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면서 어떠한 의도나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각 파면처분이 있었던 날인 2014. 1. 9. 내지 2014. 8. 26.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은 물론이지만, 각 파면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나 각 파면처분 이후의 경과를 확인한 다음 이를 기초로 파면처분 당시의 인식 여하를 따져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에 각 파면처분 전후의 경과를 다시 한 번 살펴보기로 한다.

(2) 앞서 본 기초 사실에 갑 제2, 50, 7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파면처분 이전의 정황] 원고들과 이원영이 2013. 3. 19.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를 설립하자, 피고는 2013. 4. 15. 학과별로 교수협의회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에 소속 교수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 1. 28. 피고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제19조, 제21조가 보장하는 교수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양심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이후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는 수원대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등 피고와 대립하여 왔다.

② [1, 2차 파면처분 사이의 관계] 피고가 2014. 1. 9. 원고들에게 1차 파면처분을 하자, 원고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각 1차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심사위원회는 2014. 4. 30. 1차 파면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또 징계사유로는 2013. 10. 7.자 국회 기자회견 관련 무단결강, 생태농장 관련 업무 방해⁴⁾가 인정될 뿐인데 파면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양정의 재량 일탈이라는 이유로 1차 파면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각 1차 파면처분에서 든 징계사유와 사실상 동일한 사유로 원고들에게 각 2차 파면처분을 하였다.

③ [원고들의 연구실 폐쇄]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차 파면처분을 하면서 연구실 반환 및 개인집기 반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므로 연구실을 비우지 않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건물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모두 기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4. 7.경 원고들의 연구실을 폐쇄하였다.

④ [계속적인 강의 미배정]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교수지위 보전, 업무수행 방해금지, 임금 임시지급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4.

4)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12. 24. 교수지위 보전 및 업무수행 방해금지 신청을 인용하였다(2014라528호). 그러나 피고는 위 가처분 이후에도 원고들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아니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피고 입장에서 심사위원회가 각 1차 파면처분에 대한 취소 결정에서 제시한 이유와 다른 법률적 견해를 가지는 것 자체가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는 위 결정의 취지나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으로 위 결정 취지가 종국적으로 확정될 가능성 다시 말하면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피고 자신의 판단이 관련 법리에 비추어 합리적 타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더 나아가 20여 년을 봉직한 원고들에 대한 피고 자신의 징계양정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보다 더 신중하게 따져보지 않은 채 사실상 동일한 사유로 각 2차 파면처분에 나아간 점 ② 실제로 심사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피고가 내세운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③ 법원도 여러 신청사건을 통하여 일관되게 피고에게 잠정적으로나마 원고들의 교수 지위를 보전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 ④ 피고로서는 일련의 결정이나 조치를 함에 있어서 관련 분야의 교수나 연구자들에게서 여러 관점에서의 합리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자신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합리적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제시한 징계사유가 원고들에 대한 파면 사유가 되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도 이 사건 각 파면처분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다.

(4) 결국 이 사건 각 파면처분은, 대학교수로서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강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학문연구를 보다 발전시키는 것을 본연의 업무로 하며, 이를

위하여 대학의 자율적 운영에 참여하고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다. 피고는 각 파면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다) 위자료의 액수

각 파면처분의 경위, 원고들이 각 파면처분과 관련된 쟁송절차에서 겪었을 고통, 대학교수인 원고들의 업무 내용, 원고들은 끝내 마지막 강의를 하지 못한 채 정년에 도달하게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각 20,000,000원으로 정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가) 원고 배재흠에게 255,664,000원(= 임금 235,664,000원 + 위자료 20,000,000원)과

(1) 그중 제1심판결이 인용한 임금 99,704,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배재흠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1.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5. 10.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 나머지 임금 135,96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배재흠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4.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13.부터 피고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5. 2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3) 위자료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배재흠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1. 21.부터 피고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5. 2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나) 원고 이상훈에게 197,842,500원(= 임금 177,842,500원 + 위자료 20,000,000원)과

(1) 그중 제1심판결이 인용한 임금에 대하여는 원고 이상훈이 구하는 바에 따라, 95,613,375원에 대하여는 2014. 11. 21.부터, 2,2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부터, 피고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5. 10.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 나머지 임금 80,029,125원에 대하여는 원고 이상훈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4.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13.부터 피고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5. 2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3) 위자료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이상훈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1. 21.부터 피고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5.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통지

1) 5년 이상 재직한 교직원이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퇴직급여의 1/2이 감액된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나목,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교직원이 언제 어떤 사유로 퇴직하였는지 여부는 교직원의 법률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런데 사학연금법 시행령 제75조는 학교기관의 장에게 교직원이 퇴직 그 밖에 재직 중 신분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분변동 신고서를 사학연금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교직원이 사학연금공단에 자신의 신분변동사항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학연금법 시행령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 교직원은 학교기관에게 사학연금공단에 대하여 정확한 퇴직일과 퇴직사유를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갑 제7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들이 2014. 1. 8. 1차 파면처분으로 퇴직하였다고 통지한 사실,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퇴직연금에 관하여 50%의 제한율을 적용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앞서 본 것처럼 각 파면처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사학연금공단에 대하여 원고 배재흠은 정년인 2016. 2. 29.까지, 원고 이상훈은 정년인 2015. 8. 31.까지 각 수원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다가 정년퇴직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추가로 인용하고 또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임에 따라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환	<u>김상환</u>	
	판사	이영창	<u>이영창</u>	
	판사	조찬영	<u>조찬영</u>	